

“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수 신 전 조합원사 및 매립협회 회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

참 조

제 목 「소각열회수시설에 폐기물소각전문중간처분업 부여」 관련
진행경과 주요내용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18.7.4 칠곡군 소재 제지업체인 진영제지공업(주)이 재활용시설인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전문중간처분업으로 허가를 전환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오류로 인한 전대미문의 기형적 무허가 소각시설 승인을 바로 잡고자 각계요로에 진정서 제출 및 언론보도, 관련 단체 통보, 환경부 유권해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 이에 환경부에서는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소각열회수시설은 중간처분시설 중의 소각시설로 이용은 불가하다”라고 불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며, 동 회신결과를 칠곡군에 통보하여 상기 제지업체의 소각전문중간처분업 허가부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동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행정오류로 소각열회수시설의 소각시설 전환 시도 조짐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조합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 임 : 1. 소각열회수시설에 폐기물소각전문중간처분업 부여 관련 칠곡군 회
신에 대한 답변 1부.
2. 소각열회수시설에 폐기물소각장 허가 철회 요청 진정서 1부. 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담당 김정훈 팀장 한인성 사무국장 장기석 부이사장 진원기 이사장 박무웅
협조자

시행 한공조 2018 - 456호 (2018. 11. 16) 접수

우 04508 서울시 종로구 종로 50-1(만리동1가, SKY1004빌딩) 13층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rema@krema.kr

/ www.krema.kr

/ 비공개



“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한국자원순환에너지
공제조합

2018. 10. 1

수신 경상북도 칠곡군수

참조 환경관리과장

1. 한공조-322호[소각열회수시설에 폐기물소각전문중간처분업부여 관련 민원제기 및 회신요청, '18.8.6] 및 칠곡군 환경관리과-27909호[민원제기에 대한 답변, '18.8.17]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관내 진영제지공업(주)의 재활용시설인 소각 열회수시설을 소각전문중간처분업으로 허가 전환한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비고 1호에 따라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적용하였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귀 군 해석의 적합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며,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소각열회수시설을 중간처분시설 중의 소각시설로 이용은 불가하다”는 환경부 회신 결과를 불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군이 진영제지공업㈜에 처분한 소각전문처분업 허가의 위법성을 엄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18.11.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 군의 적법한 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조합 이사회에서는 귀 군의 의혹으로 점철된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각계요로에 전달하여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 입 : 환경부 질의·회신 문서 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담당 김정훈 팀장 한인성 사무국장 장기석 부이사장 진원기 이사장 박무웅
협조자 시행 한공조 - 435호 (2018. 10. 31) 접수
우 04508 서울시 중구 종림로 50-1(만리동1가, SKY1004빌딩) 13층 / www.krema.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rema@krema.kr / 비공개

[민원인입력사항]

신청 번호	1AA-1810-266777	신청 일	2018-10-18 18:50:25		
신청 인구분	기업				
기업명(상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사업자등록번호	114-82-06366		
신청인 이름	김정훈				
연락처	02-718-7900	휴대전화			
주소	[04508] 서울특별시 종구 중림로 50-1, 13층				
진행상황통보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전자우편	hun2609@krema.kr				

[민원신청내용]

민원 제목	소각열회수시설의 소각업 허가 부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요청
민원 내용 보기	<p>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p> <p>2. 최근 경상북도 칠곡군에서『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소각열회수시설이 소각전문중간처분업으로 허가를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개요</p> <p>▶ 칠곡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비고 1호에 따라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들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적정통보 이후 허가신청 가능함”을 사유로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전문중간처분업으로 신규허가를 부여함.</p> <p>나. 질의 요지</p> <p>▶ 동일 법인에 들 이상이 아닌 한 개 밖에 없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인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소각열회수시설에 소각전문중간처분업 소각시설 허가를 추가로 얹어주고 들 이상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를 적용하여 소각전문중간처분업 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으로 시행규칙 별표7 비고1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p> <p>다. 우리 조합 의견</p> <p>▶ “동일 법인이 들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기존 재활용 허가와 시설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각중간처분업 허가와 시설을 추가로 받고 설치하려</p>

는 경우 시설·장비·기술능력을 증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지, 허가를 반납한 기존시설에 새로운 허가를 부여하면서 그 시설이 증복된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지 아니해도 된다는 해석은 상식을 벗어난 행정 처리임
 즉,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 비고 1의 적용 대상은 동일 법인인 제3업체가 소각열회수시설이라는 “재활용 허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법인 소유로 “소각전문중간처분업 허가”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할 때 기업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소각로·파쇄기 등 주요시설을 제외한 사무실·실험실 장비·인력 등 부대시설을 증복하여 갖추지 아니하고 기존 소각열회수시설인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고 있던 사무실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	---------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원순환정책과 자원재활용과		
담당자(연락처)	심은영 (044-201-7388)		
접수일	2018-10-18 22:18:1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0-341602
답변일	2018-10-29 18:28: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과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의 소각열회수시설로 폐기물을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p>○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서는 소각시설은 중간처분시설로 소각열회수시설은 재활용시설로 정하고 있는 다른 시설이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소각열회수시설을 중간처분시설 중의 소각시설로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는 앞으로도 귀하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원재활용과(심은영, 044-201-738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답변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소각열회수시설에 폐기물소각장 허가 철회 요청 진정서

2018. 11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조합원 일동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국내 70여개 산업폐기물 소각업체가 최근 전대미문의 기상천외한 폐기물 소각장 허가를 부여한 행태를 철회하여 주십사 하는 마음에 탄원을 드립니다.

우리 산업폐기물 소각 업계는 지난 40여년간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며 쓰레기 처리업자, 혐오시설 업체, 기피해야 할 대상 시설 1호 등의 온갖 천대와 멸시를 무릅쓰고 친환경 에너지산업 1순위로 발돋움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재난·재해 사태가 왔을 때는 최선봉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온갖 굳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루속히 환경재앙을 극복하고자 동분서주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투자 노력으로 “폐열”, “여열”으로 치부되던 “소각열”을 명실 상부한 국가에너지 명칭으로 정착시켜 이제는 「자원순환기본법」에 「소각열 에너지 생산기업」으로 공식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은 국내 폐기물 처리 기반 완성과 함께 에너지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산업으로 성장하였음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며, 연간 국가 원유 수입량의 50만kL를 대체하는 에너지 기업군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이처럼 “무”에서 “유”를 “쓰레기”에서 “황금”을 “불모지”를 “옥토”로 가꿔온 산업폐기물 소각업체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산업폐기물 소각업은 아직도 국민들의 시선에서 곱게 보이지 않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법적 절차와 설득, 시설 입지에 대한 타당성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산업폐기물 소각업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서만 비로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명실상부한 폐기물처리업계의 종합 장치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열 생산을 목적으로 운영하던 제지업체 소각열회수시설에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무작위로 반입 받도록 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부여하는 전대미문의 행정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 시설에 부여된 허가가 법률적인 절차와 인가를 거쳤다면 우리 업계가 이처럼 경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업은 그 허가 신청절차 및 부여조건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령 및 지침에 정해진 세부적인 조건에 맞게 장비·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역시 관련 법령 및 조건에 맞게 시설 공사를 하는 한편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와 무관하고 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정해진 법률적 단계를 밟지 않은 제조업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하여 부대시설로

운영하던 소각열회수시설을 느닷없이 모든 폐기물을 반입 받을 수 있는 소각전문중간처분업시설로 전환하여 관련 허가를 받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소각열회수시설을 중간처분시설 중의 소각시설로 이용은 불가능하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과는 다르게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동일 법인이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가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어 실제로 대한민국 행정절차의 실종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소각열회수시설들이 최근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 그동안 형식에 그쳤던 75% 에너지회수율 준수의무가 상시 측정체제로 전환되었고, 이를 준수치 못할 경우 재활용업 허가가 취소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자 이를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로 폐기물소각업 허가 취득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환경부 제도 시행의 허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바, 환경부의 엄격한 잣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현명하신 환경부 장관님!

최근 중국발 쓰레기 대란으로 대통령까지 우려를 표명하는 실정에 이르렀던 사태를 견주어볼 때 엄격한 법률 상 허가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폐기물소각업 허가를 부여하는 것은 혐오·기피시설인 폐기물처리업 각각의 허가 절차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초유의 사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장관님께서 금번 사태의 올바른 처결을 해주십사하는 마음에 다음과 같이 요구 드립니다.

첫째, 금번 사항이 정상적인 허가로 판단이 된다면 전국에 산재한 50~60여개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소각전문중간처분업으로 전환 허가가 가능하다는 선례가 생기는 바, 법률적으로 폐기물 재활용과 처분으로 구분 지어진 경계가 무너져 폐기물 소각시설의 난립으로 폐기물 처리 시장의 일대 교란이 발생할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가환경기반시설로 특화되어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자체 및 환경부에 집단 민원이 폭주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 것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이제는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국가기반시설” 이면서 “에너지” 기업으로 특화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서 전문 업역으로 육성·보호 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행정오류로 빚어진 금번 사태에 대한 환경부 차원의 조속한 법리 판단으로 “삽으로 막아도 될 일을 굴삭기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주실 것을 소각업계 전체의 염원을 모아 진정드리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月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조합원 일동